

「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6. 8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6. 20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6. 20(월)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환경과장 전완택)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 및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35조제3항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 규정
-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잉여 소각열에 대하여는 주민편익 또는 공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및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 및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3항에 근거해 위탁

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
-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 등을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- 다만, 안 제2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·운영 방식을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판단되며
- 위탁의 경우 위탁 운영자 선정시 업무수행능력, 운영계획서 수립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임.○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.